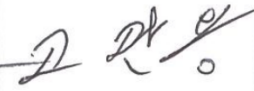


	회 장
사무처장	
	

202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26. 7. 29.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6. 7. 29.(수) 14:00 ~ 15:20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30명 중 22명 참석(감사 1인은 개의 정족수 제외)

가. 참석(22명) : 고관용, 문성은, 양은정, 원석철, 한태만, 강지영, 강희정, 고경윤, 고민좌, 고창호, 김군호, 황영호, 현명현, 현파(우영철), 박경숙, 박정해, 부현철, 양금선, 양지혜, 양창오, 이규봉, 임주리

나. 감사(1명) : 김석추

4. 개회 및 성원보고

고성민 운영사업부 부장의 성원보고 후 고관용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올해 상반기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았다고 하다. 이제 일 년에 반이 지났고 하반기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하고 여러 이사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고성민 운영사업부 부장에게 전차회의록 낭독을 요청하다.

- 고성민 부장 :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박정해 이사 : 원안 동의하다.





- 이사 일동 재청, 삼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업무보고

- 의 장 : 고성민 부장과 손복향 부장에게 업무보고를 요청하다.

- 고성민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6. 30일 현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하다.

- 손복향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6. 30일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하다.

- 의 장 : 업무보고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의안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다.

8.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및 상정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위기발굴지원 좋은이웃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6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라고 하고, 이상 6가지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안건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 일동 6개 안건 채택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6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언하다.

- 의 장 :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한 부의안건 제1호, 제2호, 제3호 의안을 먼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후, 아라중합사회복지관 관련 부의안건 제4호, 제5호, 제6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제안하다.

- 이사 일동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일반회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
센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호 의안 제주
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일괄 상정
하다.

나.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고성민 운영사업부 부장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고성민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제2호, 제3호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고경윤 이사 : 재일제주인지원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에서 오랫동안 진행하
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새롭게 추진하게 된 이
유와 사업추진 방향 등을 묻다

- 박정해 이사 :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했기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고, 재일제주인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MBC, 저희 제주공생 3개 기관이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하여 코로나 시기 1년을 제외하고 총 13회 진행해 2024년을 끝으로 종결한 사업이라고 하다. 사업종류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추진되지 않는가? 라는 의견들이 많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MBC에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의 제주공생에서 다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본인에게 자문을 요청해와, 초기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고향의집’ 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다.

- 부현철 이사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중 제10조(근무시간) 및 제16조(병가일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게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10조(근무시간) 제1항 직원의 근무시간 및 중식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원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16조(병가) 직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다’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제안하다.

- 문성은 부회장 : 부현철 이사에 제안에 덧붙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는 특수 조직이어서 국가공무원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규정이 충돌한 우려가 있어 국가공무원 규정을 준용 한다는 규정 삭제에 동의한다고 하다.

- 양지혜 이사 : 문성은 부회장 제안에 찬성하다고 하다.

- 의 장 :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에 대한 부현철 이사와 문성은 부회장의 의견은 제10조(근무시간)
제1항 직원의 근무시간 및 중식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
용한다’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16조(병가) 직원
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삭제하고 직원의 병가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
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자는 것이라며 참석이사들의
동의 여부를 묻다.

- 이사 일동 동의하다.

- 원석철 부회장 : 더 이상의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다면 상정된 제1호, 제2호 의안
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수정 제안된 대로 처리하는데 동의하다.

다. 부의안 처리

- 의 장 : 상정된 제1호, 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제3호 의안 제주특별
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수정 제안된 대로
처리하자는 원석철 이사의 동의가 있다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일동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
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제10조(근무시간) 제1항은 직원의 근무시간 및 중식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로 수정하고 제16조(평가) 직원의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로 수정처리 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위기 가구발굴지원 좋은 이웃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6호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일괄 상정하다.

마.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손복향 부장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손복향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4호, 제5호, 제6호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문성은 부회장 :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며 제4호, 제5호 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제6호 의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제3호 의안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처리하는데 동의하다

마. 부의안 처리

- 의 장 : 상정된 제4호, 제5호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 제6호 의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제3호 의안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처리하자는 문성은 부회장의 동의가 있다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일동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위기 가구발굴지원 좋은 이웃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제6호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과 동일하게 수정처리 하는 것으로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9. 폐 회

- 의 장 :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고창호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일동 폐회를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2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5:20)



2026년 7월 29일

회 장 : 고 관



부 회 장 : 문 성



양 은



원 석



한 태



이 사 : 강 지



강 희



고 경



고 민



고 창



김 군



황 영



현 명



현파(우 영)



박 경



박 정



부 현



양 금



양 지



양 창



이 규



임 주



감 사 : 허 철



김 석



확 인 자 : 김 성



기 록 : 이 현

